

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04월 28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05월 0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05월 0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시설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 규정 정비(안 제11조)
 -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 변경조례안 목적 및 정의 (안 제1~2조)
-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(안 제12조제3항)
 -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 기준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 사용료

감면조항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

○ 개정내용은

안 제11조에서는 운영실정에 맞게 오전 시작시간을 8시에서 9시로 변경
안 제12조에서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- 안 제12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신설내용 -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2. 군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행사
3.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
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○ 제12조 면제규정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군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행사에 해당될 경우의 면제부분은 납득할 수 있으나

제3호 일반인 성격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를 면제하고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까지 50%퍼센트 감경해주는 부분은 과도한 완화로 인한 형평성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다른 시군의 입법사례를 보면 면제 및 감면규정 허용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장애인단체, 국가유공자 단체, 교육기관, 비영리목적,

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,

우리군의 직장 및 동우회 부분은 타 자치단체 입법례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,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.

- 제4호 군수가 “공익상 필요”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
“공익상 필요” 표현은 허용범위를 최대한 완화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평창군 조례안에서만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,
이 부분은 공익상 “특별한 경우”로 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받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. ※ 동해, 속초, 태백, 삼척, 영월 등

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

②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

제8조(사용료 감면)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

②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

②소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

제6조(사용료 감면) 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. 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"별표2"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의자	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심현정 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직장동우회 행사의 경우 50퍼센트를 감경 할 수 있다"는 것은 모든 주민을 50% 감면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렇다 할 수 있음.
박찬원 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설내용 중 "군수가 공익상 필요" 부분은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사료됨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 중 “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”를 “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”로 하고 “08:00~12:00”를 “09:00~12:00”로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2. 군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행사
3.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
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제 11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<u>4시간</u>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을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시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8:00~12:00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다만, 전시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:00~17: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야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:00~22: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. (생략)</p> <p>제12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~②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신 설></p>	기준	사용시간	비고	오전	08:00~12:00	다만, 전시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오후	13:00~17:00	야간	18:00~22:00	<p>제11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----- 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여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시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9:00~12:00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다만, 전시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3:00~17: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야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:00~22: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~②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군 소재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</u> 2. <u>군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행사</u> 3. <u>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</u> 	기준	사용시간	비고	오전	09:00~12:00	다만, 전시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오후	13:00~17:00	야간	18:00~22:00
기준	사용시간	비고																			
오전	08:00~12:00	다만, 전시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
오후	13:00~17:00																				
야간	18:00~22:00																				
기준	사용시간	비고																			
오전	09:00~12:00	다만, 전시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
오후	13:00~17:00																				
야간	18:00~22:00																				

4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[별표]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(제11조제2항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구분 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
공연장	오전	50,000	1. 1회 단가임. 2. 토요일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3. 익일의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(철야 포함) 작업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.
	오후	70,000	
	야간	100,000	
전시실	1일	20,000	1일(09:00~18:00)
소공연장	1회	30,000	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
야외무대	1회	30,000	
연습실	1회	10,000	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이용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시설별		기준	요금	비고
악기	피아노	1회	20,000	-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 부담 - 1회란 오전, 오후, 야간 중 하나
무대조명	대공연장	1회	20,000	- 행사만을 위한 대관시 무대조명 사용료는 면제
	소공연장	1회	10,000	
음향시설	음향반사판	1회	20,000	

	핀 마이크	1회	20,000	
	무선 마이크	1회	10,000	
	빔프로젝트	1회	10,000	